#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9-311 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□ 제안이유
<ul><li>○ 산업명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산업명장 선정 취소시 산업 명장 증서와 명패를 회수하는 등 산업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.</li></ul>
□ 주요내 <del>용</del>
<ul> <li>○ "명장심사위원회"를 "산업명장심사위원회"로 함. (안 제5조)</li> <li>○ 산업명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산업명장이 지역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5조의2, 제6조제3항)</li> <li>○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함.(안 제6조제4항)</li> <li>○ 산업명장 선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, 산업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산업명장 증서와 명패를 즉시 회수하도록 함. (안 제7조)</li> <li>○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(업무담당과장)를 두고,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1조, 제11조의2)</li> </ul>
□ 개정조례안:【붙임 1】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□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□ 과려사업계회서 : 해단사하 없음

-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 - 입법예고 : 2023. 8. 30. ~ 2023. 9. 19. (20일간)
- □ 기타 참고사항
  - 현행조례(전문) : 【붙임 4】
  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#### [붙임 1]

###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명장심사위원회"를 "산업명장심사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안산시 명장"을 "명장"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의무)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보유한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
- 2.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
- 3.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
- 제6조제2항 중 "안산시 명장"을 "명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는 명장의 예우에 준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"안산시 명장"을 "명장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.
-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의 수당)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산업진흥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산업진흥과장 홍 기 봉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산업행정팀장 김 경 진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전 진 록 (행정 2858)

### [붙임 2]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선정) ① 시장은 안산시 명장심사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 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 려는 경우 안산시 명장 선정계획을 수 립·공고하여야 한다. 〈신 설〉	위원회
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<u>안산시 명장</u>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〈신 설〉	
제7조(선정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<u>안산시 명장</u> 으로 선정된 경우	

현 행	개 정 안
2. (생 략) 〈신 설〉  〈신 설〉  제11조(위원회 운영) ①·② (생 략)  〈신 설〉	2.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증서와 명패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. 제11조(위원회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
<u>〈신 설〉</u>	다. 제11조의2(위원의 수당)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